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03

발의연월일: 2021. 3. 30.

발 의 자:위성곤·김수흥·한병도

이용빈 • 이규민 • 이원택

강훈식 • 이소영 • 문진석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와 농산촌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체험관광과 지역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여행이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휴양 또는 자연풍경 감상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수한 청정 환경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산촌에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임업인들은 주로 목재, 버섯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임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는 매우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임업 관련 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도 중앙 또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제공되어 임업인에 대한 소득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이에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체험·관광·숙박 등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임업경영에 이용하는 산림 안에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조성규모,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기준 등 숲경영체험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3신설).
- 다.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자연휴양 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 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 마. 숲경영체험림의 소유자는 숲경영체험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 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법률 제 호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에 이용되는 산림 안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시설과 그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작성하거나 시·도지사가"를 "변경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가"로, "변경승인한 경우에는"을 "변경 승인한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으로,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제14조제5항, 제20조제6항 또는 제20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산림욕장등조성계획 또는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 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 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 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 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의 규모,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약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제20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숲경영체험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의3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의5제1항 중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자연휴양림등 및 숲경영체험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 및 숲경영체험림"으로 한다.

제3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 영에 이용되는 산림 안에 적 합한 시설을 갖추어 산림문화 ·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조성한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 ·허가 등의 의제) ① -----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 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 성하거나 시・도지사가 제14조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 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한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 7. (생략)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u>제14</u> 조제5항, 제20
조제6항 또는 제20조의3제5항
1. ~ 7.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은</u>
<u>자연휴</u>
양림조성계획, 산림욕장등조성
계획 또는 숲경영체험림조성계
<u>획</u>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신 설>

 _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가 소유 또는 사용・수익할수 있는 사유림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 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 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

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 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의 규모,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시장·군수·구청장은 숲경 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6)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신 설>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 경할 수 없다.

- 제20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숲경영 체험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 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 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 나 제20조의3제6항에 따라 보 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 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 다.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 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 등 및 숲경영체험림의 소유자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 는 자연휴양림등 및 숲경영체 험림-----

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3.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청문)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u>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u>	승인
<u>취소</u>	
3. (현행과 같음)	